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검토의견

(총괄부문)

○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분쟁 사건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여 시민의 건강과 재산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설치된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법령인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이 환경분쟁조정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임.

(세부사항)

○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에 의하여 환경오염 피해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목적으로 '91.5.8부터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은 3년 임기의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기능으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정신적·재산상 피해조사나 분쟁해소를 위한 알선·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95년 이후 현재까지 조정실적은 신청건수 11건에 처리건수 1건으로 나타나고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규인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이 환경분쟁조정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것으로 날로 환경분쟁이 확대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처리기간 등 규정이 없는 것은 명문화하는 등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개정조례안 제3조제2항 및 제4항의 경우 위원회의 조정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행하며,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하고,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위원 3인의 전원 출석에 2인 위원의 찬성으로 의결도록 한 것은 조정위원이 너무 소수인 관계로 공정한 분쟁해결을 해칠 우려가 있음.

○ 환경분쟁조정법에는 중앙조정위원회와 지방조정위원회로 각각 설치토록(법 제4조) 규정되어 있으나, 이해당사자가 지방조정위원회를 경과치 아니하여도 중앙조정위원회로 직결 조정요구할 수 있어 지방조정위원회 조정역

할이 제한적이어서 5년간 11건 신청에 1건 처리라는 위원회 설치의의조차 훼손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두 개 시·도가 겹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등(법 제6조, 시행령 제3조)을 제외한 사항은 지방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됨.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검토의견

(총괄부문)

○ 본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환경정책 수립과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참여하여 그 기능을 수행해 온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전략의 수립, 환경보전, 서울의제21의 실천 및 그 이행상황 점검 등 그 역할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시정구현은 물론 지구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세부사항)

○ 현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서울시의 환경정책 심의, 대안제시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95년 11월에 100명 이내 위촉위원으로 설치되어 현재 환경전문가, NGO대표, 언론인, 시민 등 67명 위원이 정책, 시민참여, 환경오염감시 등 3개 분과위를 조직·운영되고 있으며, 서울의제21 작성 및 추진, 공모사업, 환경개선사업 등 주요활동을 하여 왔음.

○ 동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녹색서울시민위원회구성·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즉 공무원의 참여배제로 본래의 심의·자문역할 미흡, 「서울의제21」 추진을 위한 실천조직 부재로 추진미흡 등 녹색서울시민위원회의 기능활성화 필요성이 요구되어 새로운 기구의 신설보다 현재의 「녹색서울시민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지속 가능한 평가, 자문의 기능을 부여하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됨.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현행 「위촉위원장 1인」에서 「시장, 시민대표, 기업대표 등 3인의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촉위원 100인이